

임시 이사회 회의록

- 개최일시 : 2013년 12월 26일(목) 09:30-12:30
- 개최장소 : 이랜드빌딩 회의실
- 총이사수 : 8명
- 출석이사 : 5명(이경준 이사, 이태웅 이사, 윤형주 이사, 박영희 이사, 배극수 이사)

이경준 이사장은 정관 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고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이사가 출석하였으므로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 1호 의안> 2013년 산하기관 추경예산(안) 심의

- ▶ 이경준 이사장은 이사회에 2013년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의 추경 예산서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정영일 사무국장에게 설명하도록 하다.
- ▶ 정영일 사무국장은 2013년도 산하기관을 운영하면서 제출한 추경예산서와 같이 법인전입금을 추가로 지원받고,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신규로 사업비와 프로그램비를 지원받은 부분과, 기타 사업비와 운영비의 예산 변동의 증감사유가 발생하여, 이사회에 심의 요청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마포데이케어센터 328,547천원, 창전데이케어센터 389,251천원,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900,300천원,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3,498,116천원, 중랑데이케어센터 261,424,565원, 하당노인복지관 1,741,299,955원, 이랜드하당재가센터 100,162,350원, 진도노인복지관 1,221,132,794원, 서구노인종합복지관 2,249,736,876원, 서구노인복지센터 712,306,116원, 꽃밭정이노인복지관 1,896,047,220원, 꽃밭정이노인복지센터 129,248,275원,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 1,201,988,698원, 목포이랜드재가센터 130,573,438원, 서울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3,852,591,000원, 강동노인복지관 치매요양원 575,510,627원, 춘천남부노인복지관 2,212,983,110원의 추경예산 심의 요청 및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심의를 요청하였다고 설명하다. 또한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서구노인복지센터는 효과적인 사업수행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2장제1절제16조(예산의 전용) 1항에 의거하여 관항목간예산전용(안)을 제출하며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다고 설명하다.
- ▶ 이경준 이사장은 정영일 사무국장의 설명을 토대로 2013년 마포데이케어센터, 창전데이케어센터,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중랑데이케어센터, 하당노인복지관, 이랜드하당재가센터, 진도노인복지관,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서구노인복지센터, 꽃밭정이노인복지관, 꽃밭정이노인복지센터,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 목포이랜드재가센터, 서울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강동노인복지관 치매요양원, 춘천남부노인복지관 추경예산(안),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이사들의 의견개진과 심의를 구하다.
- ▶ 이태웅 이사는 제출한 추경예산서와 같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가 있는 바, 산하기관 추경예산(안) 및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동의함을 표하다.
- ▶ 박영희 이사가 동의 제청하다.

▶ 이경준 이사장은 본 건을 표결에 부치니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하다.

▶ 이에 이경준 이사장은 본 건 '2013년 산하기관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이 결의되었음을 선포하고,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진행과 결과를 사무국에 위임하다.

<제 2호 의안> 2014년 법인 및 산하기관 사업계획서(안) 및 예산서(안) 심의

▶ 이경준 이사장은 본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정영일 사무국장과 각 복지관 관장으로 하여금 2014년 사업 및 예산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하다.

▶ 정영일 사무국장은 2014년도 기부금 수입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예산을 수립하였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본예산을 수립하게 됨을 설명하고, 법인의 사업계획과 예산서 수립배경을 설명한 후 2014년 사업계획 및 2014년 준예산 세입, 세출 각 8,732,342천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다.

▶ 서울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장천식 관장과 진도노인복지관 강주호 관장은 2014년 사업계획과 예산서 수립배경을 설명하고, 현재의 복지관 주요현황과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 총 세입, 세출 각 서울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3,529,383천원, 강동노인복지관 치매요양원 548,155천원, 시립강동노인복지관데이케어센터 307,500,000원, 진도노인복지관 1,135,066,685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다.

또한 서울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및 진도노인복지관을 제외한 산하기관은 2014년도 정부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의 준예산 제출 요구가 있어 준예산을 수립하였으며, 정부의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확정된 정부 보조금을 근거로 본예산을 수립하게 됨을 설명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서 수립배경을 설명한 후,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준예산에 대해 보고하다.

서울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3,238,351천원, 마포데이케어센터 353,746천원, 창전데이케어센터 383,600천원,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2,875,523천원, 중랑데이케어센터 269,750,020원, 하당노인복지관 1,782,302,330원, 이랜드하당재가센터 94,380,000원, 서구노인종합복지관 2,195,350,510원, 서구노인복지센터 698,565,688원, 꽃밭정이노인복지관 1,856,376,694원, 꽃밭정이노인복지센터 134,570,214원,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 1,221,125,630원, 목포이랜드재가센터 153,217,550원, 목포이랜드터카페 60,410,000원, 목포이랜드한담 10,510,000원, 춘천남부노인복지관 2,053,930,799원,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2,125,000,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며 승인을 요청하다.

▶ 이경준 이사장은 2014년도 법인과 산하기관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지를 이사들에게 묻다.

▶ 이태웅 이사가 법인 및 산하기관 사업계획서(안) 및 예산서(안) 심의 통과에 동의하다.

▶ 배극수 이사는 산하기관이 할 수 없는 부분의 서비스는 지역 내의 협력기관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하기관 관장 이하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수고해줄 것을 당부하다.

▶ 윤형주 이사가 제청하다.

▶ 이경준 이사장이 본 건을 표결에 부치니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하다.

▶ 이에 이경준 이사장은 본 건 '2014년 법인 및 산하기관 사업계획서(안) 및 예산서(안) 심의'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가결 되었음을 선포하다.

▶ 이경준 이사장은 본 이사회의 안건이 적합하게 결의되었음을 알리고,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사무국에 위임하다.

<제 3호 의안> 산하기관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건

▶ 이경준 이사장은 진도노인복지관, 꽃밭정이노인복지관, 서울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춘천남부노인복지관의 운영규정 개정(안) 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정영일 사무국장에게 진도노인복지관, 꽃밭정이노인복지관, 서울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춘천남부노인복지관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다.

▶ 정영일 사무국장은 진도노인복지관, 꽃밭정이노인복지관, 서울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춘천남부노인복지관의 효과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첨부된 진도노인복지관, 꽃밭정이노인복지관, 서울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춘천남부노인복지관의 운영규정 개정(안)을 자세히 설명하다.

▶ 참석 이사들이 세부내용을 확인한 후 배극수 이사가 '본 건 진도노인복지관, 꽃밭정이노인복지관, 서울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춘천남부노인복지관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을 동의하고, 이태웅 이사가 동의재청하다.

▶ 이경준 이사장은 본 건을 표결에 부치니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하다.

▶ 이에 이경준 이사장은 본 건 '산하기관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건'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가결 되었음을 선포하다.

▶ 이경준 이사장은 본 이사회의 안건이 적합하게 결의되었음을 알리고,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사무국에 위임하다.

<제 4호 의안> 재단 산하기관 관장 및 부관장 임면의 건

▶ 의장은 이사회에 2013년 재단 산하기관 관장 및 부장들의 임면(보직이동)건에 관한 사안을 상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정영일 사무국장에게 설명하도록 하다.

▶ 정영일 사무국장은 산하기관 운영효과를 극대화 하고, 각 기관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관장 및 부장들의 보직이동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이를 위하여 각 관장 및 부장들의 강점과 전문성, 산하기관들의 상황을 분석하였음

을 설명하며 구체적인 임면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다.

- 아 래 -

성명 및 직위	변경 전 근무지	변경 후 근무지
심정영 관 장 -> 관 장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	중랑노인종합복지관
전명우 관 장 -> 관 장	중랑노인종합복지관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신세환 관 장 -> 부관장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중랑노인종합복지관
박철민 관 장 -> 관 장	하당노인복지관	진도노인복지관
강주호 관 장 -> 관 장	진도노인복지관	하당노인복지관
조희정 관 장 -> 부관장	월곡종합사회복지관	강동노인종합복지관
김윤태 부 장 -> 관 장	강동노인종합복지관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

▶ 이태용 이사는 각 기관의 관장의 이동에 따른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직원들이 잘 협력하여 일해 나갈 것을 부탁하며 각 복지관 관장 임면 건에 대하여 동의함을 표하다.

▶ 윤형주 이사가 제청하다.

▶ 이경준 이사장이 본 건을 표결에 부치니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하다.

▶ 이에 이경준 이사장은 본 건 재단 산하기관 관장 및 부관장 임면에 관한 건을 승인하게 됨을 선포하고, 임면내용을 아래와 같이 다시 한 번 발표한 후,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진행과 결과를 사무국에 위임하다.

- 아 래 -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발령일자
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심정영		2014.1.1
서구노인종합복지관장	전명우		
중랑노인종합복지관 부관장	신세환		
진도노인복지관장	박철민		
하당노인복지관장	강주호		
강동노인종합복지관 부관장	조희정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장	김윤태		

<제 5호 의안 : 재단 산하기관 관장 무보수 겸직 심의 건>

▶ 이경준 이사장은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관장이 무보수 상임 근로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정영일 사무국장에게

게 설명 하도록 한다.

▶ 정영일 사무국장이 각 기관 관장 인사이동에 따라 일부 기관장들이 산하 센터 및 사업장에 센터장 및 대표 등으로 무보수 겸직해야함을 설명하다, 각 시설별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 되어 있어 4대 보험료의 이중부과 문제가 발생하므로 각 관장의 보수는 각 복지관에서만 지급되고 무보수로 겸직을 하고 있는 것이 관련 기관에 확인 제출해야 함도 설명하다.

- 아 래 -

직 위	성 명	겸직기관	겸직기관 직위	비고
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심정영	중랑데이케어센터	센터장	
서구노인종합복지관장	전명우	서구노인복지센터	센터장	
하당노인복지관장	강주호	부설 이랜드하당재가센터	센터장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장	김윤태	목포이랜드재가센터	센터장	
		목포이랜드더카페	대표	
		목포이랜드한담	대표	

▶ 박영희 이사가 심정영 관장, 전명우 관장, 강주호 관장, 김윤태 관장의 겸직에 대해 동의하고 윤형주 이사가 재청하다.

▶ 이경준 이사장은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산하 기관 기관장들의 무보수 겸직을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 이에 이경준 이사장은 본 건 '재단 산하기관 관장 무보수 겸직 심의 건'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가결 되었음을 선포하다.

이경준 이사장은 본 이사회의 안건이 적합하게 결의되었음을 알리고,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사무국에 위임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다.

폐회시각은 12시 30분

2013년 12월 26일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

이사장 이 경 준



이 사 이 태 웅



이 사 윤 형 주



이 사 박 영 희



이 사 배 극 수

